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77
----------	------

2024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일, 유정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수정안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유정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진행하고 있음.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 전 임시보호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유기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제1항).
- 2) 임시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동물이 입양되기 전에 임시보호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단이 구조한 동물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 입양·기증예정인 동물을 보호·치료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의뢰하는 피학대 동물과 사육포기 동물 등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sup>1)</sup>.
- 응급치료된 동물과 입양이 되지 않은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sup>2)</sup>에서 보호하게 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입양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보호비용, 인력, 시설 등의 한계로 인해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sup>3)</sup>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입양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

1) 사업목적 : 24시간 체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으로 응급동물, 입양대기동물의 치료를 지원하여 입양률을 높이고 폐사 및 안락사 최소화

사업예산 : 2억 5천4백만원, 사업목표 : 240마리 의료지원

2)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서울시에 총 29개소에 있으며, 동물구조, 보호, 입양, 인도적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서울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3개소: 마포구, 구로구, 동대문구), 1개소 예정(강동구)  
자치구 지정·위탁업체(26개소 운영)

3)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써 서울시는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적용하고 있음

서울시는 입양 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sup>4)</sup>하고 있으며, 임시보호 정책 추진 기간 동안<sup>5)</sup> 안락사 비율은 감소하여<sup>6)</sup>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5조의2와 같이 유기동물 임시보호자를 대상으로 동물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임시보호자는 입양예정자가 아니므로 일정시간 이후 해당 동물이 또다시 인도적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양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임시보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sup>7)</sup>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2024년 기준 임시보호 봉사자는 530명 참여

5)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실적('20~'23) : ('20) 151마리, ('21) 192마리, ('22) 95마리, ('23) 100마리

6) 인도적 조치 비율('20~'23) : ('20) 16.1%, ('21) 9.8%, ('22) 14.0%, ('23) 12.%

7)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의 종류로 인식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요지 :

- 신설조항 용어인 ‘임시보호’의 정의를 신설함.
- ‘임시보호자’를 ‘자원봉사자’로 하고,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77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3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신설조항 용어인 ‘임시보호’의 정의를 신설함.
- ‘임시보호자’를 ‘자원봉사자’로 하고,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 골자

- “임시보호”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 “유기동물”의 정의에 맞게 용어 수정(안 제15조의2)
- 임시보호 기간 동안 시장이 접종 및 치료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5조제2항)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안 제15조의2의 제목 “(유기 동물의 임시보호 등)”을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시보호자”를 “자원봉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를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로, “비용을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제2조(정의)(현행과 같음)</p> <p>1. ~ 1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2조(정의)(개정안과 같음)</p> <p>1. ~ 14. (개정안과 같음)</p> <p>15. “<u>임시보호</u>”란 <u>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5조의2(<u>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u>)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u>임시보호자</u>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임시보호기간 동안 접종 및</p>	<p>제15조의2(<u>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u>) ① --- ----- ----- ----- ----- <u>자원봉사자</u>----- ----- -----.</p> <p>② ----- -----</p>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자 선정  
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지원방법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치료 등을 지원하거  
나 소요된 비용을 --  
----- 지원--  
-----.

③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원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u>15.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u></p> <p><u>제15조의2(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u></p> <p><u>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③ 임시보호자 선정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